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6호 2014. 11. 26. (수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21호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하동군 규칙 제11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9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7차) ..... 7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726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416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1월 26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규칙 제1121호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 소속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  
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  
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명 : 하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 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 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 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 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 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신설>	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신설>	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4. (생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 4 ) 제 416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1월 26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규칙 제11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를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1적용”을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하고, “성희롱에”를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고, 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p>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 -----.</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u>내부 종결 처리</u></li> <li>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u>별표 1적용</u></li> <li>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u>별표1 적용</u></li> </ol>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내부 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li> <li>2. -----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li> <li>3.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li> </ol>
<p>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p>	<p>제4조 (징계의 감경) ① ----- ----- ----- ----- ----- ----- ----- ----- ----- ----- -----</p>



하동군 고시 제2014-90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2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3-4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8 ) 제 416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 범아리산124-19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 하동읍성로343-4	20141120	20070618	시적 217호인 하동읍 성앞을 지나가는 도로 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위태리산1367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돌고지로1342-24	2014112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 점에 있는 재로서 재 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 서 돌고지재라고한 옛 지명 사용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남산길7-4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남산길7-4	20070618	20070618	남산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남산길7-4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남산길7-6	20070618	20070618	남산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안계리637-1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안계길93-1	20141120	20080402	마을앞 뚝뫼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청룡리367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청안길24-9	20141120	20080402	옛날부터 전해온 이름 청룡안길의 줄임말로 청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두양리산171-7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신기동길35-1	20141120	20080402	자연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송림1길9-19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송림1길13-5	20141120	20090302	광평리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지명에 일련 번호방식의 첫번째 도 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장암리277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진양로940	20141120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 결하는 구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 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양포리601-2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소전방길25	20141120	20090302	소전방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운암리718-1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진양로786	20141120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 결하는 구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 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기타 지역별동조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 서항리949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 중촌길49-30	20141120	20091229	마을명 부여	



하동군 공고 제 2014 - 726호

##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 2. 제정이유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국민을 적극 발굴·포상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정의 및 시상에 관한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나. 수상자의 요건에 관한 내용(안 제5조)
- 다. 대상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내용(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라.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차후 예산 확보 계획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서식)를 하동군(기획감사실, 전화 880-2013, FAX 880-2019, e-mail [lh88@korea.kr](mailto:lh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10 ) 제 416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하동군 한다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명 하동군 한다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있는 ‘한다사’는 하동의 옛 지명을 말하며, 하동의 역사와 문화, 하동군민의 정신을 담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시상인원) 시상부문 및 시상인원은 제1조에 부합하는 대상자로서 대상 1개 부문에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시상 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1조에 따라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 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제6조(대상자 심사 등) 대상자 심사 및 시상절차, 시상시기, 수상자결정 등은 하동군 한다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7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또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하동군 한다사대상 선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 12 ) 제 416 호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군의회 의원
  - 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 3. 군단위 기관단체장
  - 4. 그 밖에 각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 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이 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수상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할 수 있다.  
② 이 대상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등 단체설립을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